

(통권 21-3호)

# 예산·재정정책 정보

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,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·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·정리한 자료입니다.

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,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Tel : 635-5205)

2021. 4. 2.



**충청남도의회사무처**  
(예산정책담당관)

| 분 야 별 목 차      |  |     |
|----------------|--|-----|
| 분 야            | 제 목  | 페이지 |
| I. 경제          | 1. 미국 금리상승 요인과 시사점   | 1   |
|                | 2.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흐름과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 |
| II. 재정         | 3. 세대효과와 출생성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   |
|                | 4. FY2019 지방재정분석 결과 및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 |
| III. 정책        | 5.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정책: 충청남도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   |
|                | 6.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(협동연구)<br>(충남 농정 거버넌스 체계 실태 사례 연구) | 8   |
|                | 7. 인구감소·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정책<br>개선방안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| 9   |
| IV. 법률<br>제·개정 | 8.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법률의 의의<br>- 특례시를 중심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| 10  |

## 1. 미국 금리상승 요인과 시사점

- 3월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(3.7조)이 연이어 발표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세
  - 기대인플레이션을 상승은 백신 접종 시작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와 고용지표 개선, 원유·원자재의 가격상승 등에 기인
  - 인플레이션 우려로 완화적 통화정책이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실질금리인 물가연동국채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
  
- 미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
  - 최근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가 이어지면서 주가지수는 하락, 채권은 순매수세
  
- 시사점
  - 최근 미국 금리 상승은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국채 수요에 대한 불안, 기대인플레이션율과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양적완화 조기 축소 가능성 대한 우려 등에 기인
  - 최근 미국 금리의 급상승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금리 급상승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

출처 : 국회예산정책처(「경제·산업동향&이슈」, 2021. 3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## 2.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흐름과 시사점

- 세계경제 팬데믹으로 큰 충격, 선진국 더욱 **심각한 경제손실**
  - IMF 2020년 1월과 2021년 1월 세계경제성장률 약 6.8%p 하락
  - 백신접종률 확대 어려움으로 기존 경제성장 추세복귀는 어려움
- **미국과 중국**: 세계경제회복을 주도, 기존 **성장궤적 복귀 전망**
  - 미국은 통화·재정 부양책과 백신 보급을 통해 경제성장 도모
  - 중국경제는 강력한 방역조치, 수출회복으로 8% 내외 고도성장
- 팬데믹 초기에 효과적인 대응에 실패한 **유럽 선진국들과 일본**은 2021년에 백신공급과 접종이 지연되고 있어 **경제회복세 완만**
  - 신흥개도국(중국 제외) 경제성장률은 '20년 -5.0%, 2021년 3.4% 예상, 고도성장이 필요한 신흥개도국은 낮은 성장세
- 미국·중국 간 **분쟁 영역의 확대**와 글로벌 **공급망의 다핵화**
  - '19년부터 본격적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이 바이든 신정부 지속
  - 미·중 간 무역분쟁, 코로나팬데믹으로 공급망 중국 중심 탈피
  -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 부채급증으로 세계경제성장 리스크 상승 → 글로벌 부채 확대에 따른 세계경제의 취약성
  - 신흥개도국은 민간부채가 가파른 증가세로 추정
- 선진국의 부양책에 따른 **물가불안 위험**의 부각
  - 선진국 경기부양조치와 세계경제 회복세로최근 물가불안 우려
  - 기대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면 미국경제 과열 가능성 시사

○ 시사점

-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에 따라 한국과 G7 간 1인당 GDP 격차의 축소
- 2021~2022년에도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이 각국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 될 것으로 보임
- 만약 글로벌 경제의 다핵화가 진전되면서 경제블록화가 나타난다면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의 수출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
- 대규모로 공급되고 있는 국제유동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중기적으로 물가불안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유의
- 팬데믹 이후에는 정부가 경제성장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, 중앙은행이 정부정책

출처 : 국회예산정책처(「경제·산업동향&이슈」, 2021. 3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### 3. 세대효과와 출생성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

- '80년생 세대부터 출산성향 급감, '92년생 저점, 이후 소폭 상승
  - '10년 후반 합계출산율 하락원인은 출산성향이 낮은 세대 주류
  - 분석결과, 1992년 이후 출생세대부터 나타난 세대효과의 상승이 지속될 경우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수 있음을 제시
  
- 세대별 출산성향과 출생성비 사이의 관계 검증한 결과
  - 출생성비가 증가하면 자녀가 있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지며, 자녀가 있을 확률의 감소는 혼인의 감소를 통해 나타나는 것
  - 여성의 출생 당시 출생성비가 높을수록 자녀가 있을 확률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
  - 출생성비가 높은 지역에서 태어난 여성이 자녀가 있을 확률이 낮은 이유는 혼인 확률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
  
- 출산율 제고에 세대별 출산성향과 출산성향의 변화원인 등 고려
  - 저출산원인으로 분석된 세대효과의 변화는 최근 세대가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가정과 노동시장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사회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
  - 여성의 가정 내 돌봄과 양육부담 완화 및 노동시장 참여제고를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, 저출산 심화추세를 극복하기 곤란
  - 최근의 사회관념 변화를 반영하여, 전통적인 가족관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가족의 개념을 확대 정의하고, 새로운 가족개념의 정착을 지원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각적 방안 강구 필요

출처 : 국회예산정책처(「경제·산업동향&이슈」, 2021. 3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#### 4. FY2019 지방재정분석 결과 및 시사점

- FY2019 지자체들은 전년도에 이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경제 침체 상황속에서 재정효율성 및 계획성 강화 등 추진
  - 향후 급격한 지방재정 환경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 위험 관리를 위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계획성 등 자치단체별 재정운영 역량 강화 관심 필요
  
- **(재정건전성)**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환경변화에 따라 자치단체 재정지출 증가 등으로 재정수지가 전년 대비 다소 부진
  - 자치단체들의 재정운영 노력에 따라 채무 및 부채 측면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양호한 편
  - 다만, COVID19 등 환경변화를 고려,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
    - 관리채무비율: '15년 10.98% → '16년 9.3% → '17년 8.06% → '18년 7.35% → '19년 6.54%
    - 통합유동부채비율: '15년 27.98%→'16년 26.10%→'17년 23.01%→'18년 23.26%→'19년 2.6%
    - 공기업부채비율: '15년 65.07%→'16년 57.93%→'17년 41.58%→'18년 37.26%→'19년 34.4%
  
- **(재정효율성)** 지방보조금, 출자출연전출금 등 외부지원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표값은 전년 대비 일부 개선
  - 여전히 전년 대비 지방보조금과 출자출연전출금 증가폭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세출관리 노력 필요
  -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지방세 체납액과 세외수입체납액의 감소폭이 감소 경향

- 체납액증감률[지방세]: '15년 4.61% → '16년 2.45% → '17년 -2.41% → '18년 -5.44% → '19년 -4.24%
- 체납액증감률[세외수입]: '15년 0.98% → '16년 -4.34% → '17년 -2.76% → '18년 -5.41% → '19년 1.27%

- **(재정계획성)**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비율은 특·광역시와 자치구의 경우, 보편적 복지확대에 따라 지방비 부담 증가
  - 이중 **특·광역시**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에 대한 지출 압박 증가로 지표값이 높음
  - 반면에, **군 자치단체**들의 경우 투자사업 지연 및 계획변경, 투자심사 통과 등 영향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재정사업의 예산반영이 100% 기준에 미달
- '19년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의 전국 평균이 101.96%이며 특·광역시 평균(104.44%)이 도 평균(100.73%) 및 시 평균(100.44%)보다 높음

출처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(지방자치 정책브리프, 2021. 3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## 5.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정책: 충청남도 사례

- 국가의 경부축 중심 개발과 수도권 영향으로 북부권 산업입지가 증가하고 천안대전을 잇는 경부축을 중심으로만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서남부권 저성장 초래
  - '07년 4월 조례 제정을 통해 별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도입<sup>1)</sup>,
  - 보통세에서 재원 확보, 시군별 발전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
  - 도지사 소속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 설치, 제안된 사업은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에서 심의
-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정책 구조와 추진시스템
  - '07년 국가지정 낙후지역과 별도로 홍성과 예산을 제외하고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8개 시군을 선정(6개 지표)
  - 인구감소, 고령화, 취업기반, 소득수준, 기반시설 등 17개 지표로 변경하고 표준화점수에 의한 평균이하지역 선정(현재)
  - 선정 시군 대상 기본계획-개발계획-시행계획 수립
  - 종합계획, 권역별-분야별 발전전략 및 과제 등과 연계하여 사업 발굴, 시군간 연계형 사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
  - 도 제안사업, 시군경쟁공모사업, 시군자율사업의 유형 구분
  - 공모를 통해 경쟁성 부여, 내실 있는 사업 발굴 추진
- 지방주도로 사업계획,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균형발전정책 필요
  - '균형회복'의 의미 속에는 지역 간 '불균형 해소'뿐만 아니라 '삶의 질 보장'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는 시기 도래

출처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(세계지방자치동향 E-book, 2020. 12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1) 「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」를 근거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

## 6. 지방분권을 위한 농정 추진 체제 개편 방안(협동연구)

### (충남 농정 거버넌스 체계 실태 사례 연구 포함)

-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-지방의 농정 역할분담과 관계설정 필요
  - ‘농정분권추진위원회’ 도입, 농정영역에서 국가사무와 지방이양 사무 구분편성이나 지방이양사무 및 재정의 단계적 이행 논의
  - 재정 이양에 따른 농정예산 축소 및 지역 간 재정력 격차 심화 대비,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 검토 필요
  - 지방 미이양 농정분야 국비 차등지원 도입 필요
- 계획협약제 도입 및 실험, 농정분야 국비중심 정책추진방식 개선 필요, 이는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 관점에서 중요
  - ‘농촌협약사업’ 등 현재 농정예산 중 일부를 계획협약제로 운영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주민 의견수렴제 등 보완 필요
- 농업회의소 대표성 확보토록 주요 농정시책에 대한 심의권 확보
  - 지방농정심의회와 농업회의소의 위상 정리 필요
  - 지방농정심의회 위원 구성에 있어 ‘지분’, ‘위원 추천권’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개정 필요
  -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나 사회적 경제연합 조직을 매개로 하는 거버넌스가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인센티브 마련 필요
- 민간부문과 지자체 행정부문 협력, 소통 관행 축적 필요
  - 농업회의소,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,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 현상을 여러 농촌 지자체의 행정 관계자, 농업인, 주민 등이 인지하고 타 지역의 경험 공유 필요

출처 : 한국농촌경제연구원(협동연구 총서 20-73-01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## 7. 인구감소·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정책 개선방안 연구

- 인구감소 시대에 지역축소, 세입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자체가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상수도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고민해야할 정책방향과 정책수단, 국가(중앙정부) 역할과 책무 규정
  - 지방상수도의 제반여건에 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실태 진단
  - 맞춤형 정책을 위한 2단계 유형화결과 및 유형별정책수단 제시
  - 지표분석을 통해 국가 정책·재정 지원의 선택·집중이 필요한 지자체군 69개를 선별(1단계), 선별된 지자체별로 적합한 사업구조를 제안하기 위해 4개 유형으로 재분류(2단계)
  - 선행연구의 정책방안, 국내외 법제도 현황, 해외사례 등을 통해 실현가능성 높은 정책수단을 선별하고 법·제도 개선방안을 제시
  - 특히, 「수도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 및 관련 법령, 행정규칙 등을 중심으로 법·제도 개선방안 제시
  
- 정책제안
  - 인구감소·지방분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된 바람직한 책무방향 제시
  -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급정책, 요금정책, 주민참여 등에 대해 법·제도 개선방안 제시
  - 지자체 재정건전성과 상수도시설 노후화를 고려한 국고지원사업 내용, 요금·원가 산정방식 등에 대해 법·제도 개선방안 제시
  - 지자체 주도의 지속가능한 지방상수도 사업 운영을 위한 권역별 통합, 위탁 등 사업구조 다각화에 대한 정책수단 방향 제시

출처 : 국토연구원(기본 20-24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## 8.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의의(특례시를 중심으로)

-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대응
  - 기존의 분리적 행정구역 접근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도(道)에서 분리하여 광역시로 승격하였으나,
  - 최근의 통합적 행정구역 접근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광역시 승격 요구에 대응
  
- 균형발전적 접근의 요구
  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법률안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단일의 인구규모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특례시 지정기준으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,
  - 최종적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
  
- 행정명칭의 부여
  - 특례시는 단순히 “특례시”라는 행정명칭이 부여되는 제도로 특례시가 기초자치단체의 종류를 구분하는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것은 아님
  
- 추가적 권한특례 부여
  -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정한 종류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는 않지만, 기존에 부여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에 추가적 특례 부여
  
- 특례부여 제한요건

- 특례시에 적용되는 특례 중에서 다른 지자체의 재원감소를 유발하거나 시·도의 도시·군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법률안의 부대조항으로 규정
- 그러나 기존에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대상도시에서 기준보조율 체계개선 등의 재정특례를 요구한 바가 있음

### ○ 추가적 권한특례 부여

-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특정한 종류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는 않지만, 기존에 부여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에 더하여 추가적인 특례 부여

### ○ 특례부여 제한요건

- 특례 중에서 다른 지자체의 재원감소를 유발하는 등의 특례를 두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법률안의 부대조항으로 규정
- 그러나 기존에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대상도시에서 기준보조율 체계개선과 도세징수액의 교부비율 상향 및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특례시 직접교부 등의 재정특례를 요구한 바가 있음

### ○ 대도시 행정의 실질화 확보

- 특례시의 도입으로 기존 대도시의 분화와 특례시의 권한확대 및 기초의 실질적인 계층화가 발생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다양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, 기존의 대도시 역할과소를 해소하는 동시에 권한 확대를 기초로 특례시의 행정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

출처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(「지방의정 브리프」, 2021. 2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